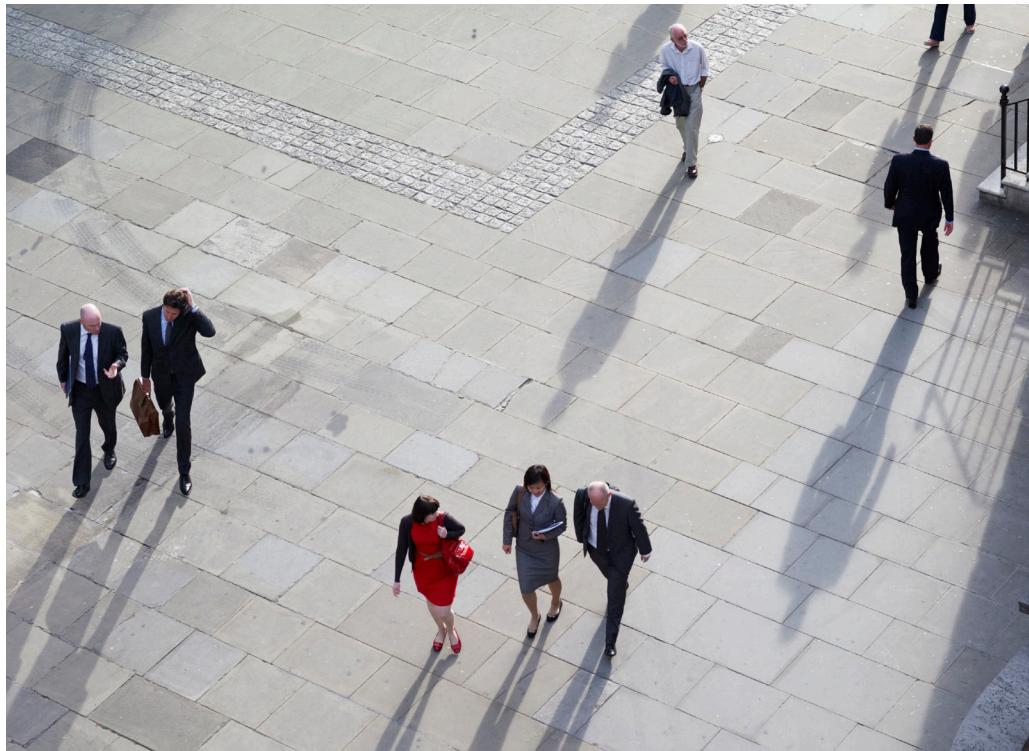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 (PSAK) *Pocket guide* 2013



www.pwc.com/id

PSAK Pocket guide – 2013

본 책자는 2013년 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될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 ('PSAK')의 인식과 측정기준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 회계기준 하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이나, 보험·광업과
비영리조직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 책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계기준과 원칙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주석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기타 주제

Contents

Accounting rules and principles 회계기준과 원칙	1
1. Introduction 서문	1
Accounting principles and applicability of PSAK 회계원칙과	
2. PSAK의 적용	2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SAK 1 재무제표 표시	3
4. Accounting policies,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PSAK 25	8
5. Financial instruments –PSAK 50, PSAK 55, PSAK 60 금융상품	10
6. Foreign currencies – PSAK 10, PSAK 63 환율변동효과	21
7. Insurance contracts –PSAK 62 보험계약	23
8. Revenue –PSAK 23, PSAK 34, PSAK 61 수익	24
9. Segment reporting –PSAK 5 영업부문	27
10. Employee benefits –PSAK 24 종업원급여	28
11. Share-based payment –PSAK 53 주식기준보상	31
12. Taxation –PSAK 46 법인세	33
13. Earnings per share –PSAK 56 주당이익	35
 Balance sheet and related notes 재무상태표와 관련 주석	36
14. Intangible assets –PSAK 19 무형자산	36
15.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SAK 16 유형자산	38
16. Investment property –PSAK 13 투자부동산	40
17. Impairment of assets –PSAK 48 자산손상	42
18. Lease accounting –PSAK 30 리스회계	44
19. Inventories –PSAK 14 재고자산	46
20. Provisions and contingencies –PSAK 57 충당부채와 우발채무	47
21.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and financial commitments – PSAK 8 보고기간후 사건	51
22. Equity (Share capital and reserves) 자본 (자본금과 잉여금)	52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54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23.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PSAK 4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54
24. Business combinations –PSAK 22 사업결합	56
25. Disposals of subsidiaries, business and non-current assets – PSAK 58 종속기업, 영업 및 비유동자산의 매각	59
26. Equity accounting –PSAK 15 지분법	61
27. Interests in joint ventures –PSAK 12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62
Other subjects 기타 주제	
28. Related-party disclosures –PSAK 7 특수관계자 공시	63
29. Cash flow statements –PSAK 2 현금흐름표	65
30. Interim reports –PSAK 3 중간보고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ISAK 16, ISAK 22	67
31. 민간투자사업	69
32. Retirement benefit plans – PSAK 18 퇴직급여제도	71
Index by standards and interpretation	73

Accounting rules and principles 회계기준과 원칙

1. *Introduction 서문*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국 회계기준간의 점진적 통합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2년 1월 1일까지, 50개 이상의 회계기준이 수정되고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은 200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IFRS(일부 수정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까지, PSAK 38과 PSAK 60이 수정되었고 PSAK 51은 철회되었습니다.

통합과정은 IFSR 9~13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기준을 수용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준 제정기관은 새로운 기준의 적용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들(IFRS)과 자국 회계기준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까운 장래에는 IFRS로부터 제한적인 새로운 기준과 해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Accounting principles and applicability of PSAK

회계원칙과 PSAK의 적용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 위원회(*Dewan Standar Akuntansi Keuangan, 'DSAK'*)는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PSAK')를 결정하고 기준의 해석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PSAK은 영리조직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영업성과·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대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
-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한(또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소급 재작성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PSAK 하의 회계원칙에 적용되는 개념은 DSAK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 the Framework) 내에서 규정됩니다.

3.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PSAK 1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PSAK 1 ‘재무제표 표시’의 목적은 표시된 재무정보가 이전기간의 재무제표 및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경영자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규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최소 공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SAK 1 관련 지침은 허용가능한 공시 형식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준 또는 해석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합니다.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alance sheet)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는 특성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합니다. 최소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내에서, 경영자는 표시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요구됩니다. 표시 형식에는 수직 또는 수평 형식의 사용, 표시되는 세부 계정의 분류, 그리고 정보의 공시위치(기본 재무제표 또는 주석) 등을 포함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자산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당기 법인세관련 자산.
- 자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비지배지분.
- 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당기 법인세관련 부채; 금융부채; 충당금;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 매각예정 자산과 부채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PSAK 58,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를 표시합니다. 기업은 단일 보고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일 보고서 방식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두 개의 보고서 방식에 따르면,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추가됩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모든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합니다.

*Items to be presented in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 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법인세비용.
-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 당기순손익.
-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
-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배분됩니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Material items 중요한 항목

수익과 비용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공시는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합니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원가;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감액; 유형자산의 처분; 투자자산의 처분; 중단영업; 소송사건의 해결;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

기업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b)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PSAK 25,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section 29에서 PSAK 2의 요구조건과 함께 다릅니다.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석은 회계정책과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을 포함합니다.

4. Accounting policies,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PSAK 25

회계원칙,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업은 특정 환경에 적용되는 IFAS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의 요건에 충족하는 회계정책을 따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기준은 선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은 적절한 회계정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합니다: 충실한 표시,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 종립성, 신증함, 완전성. 만일 특정상황에 적용할만한 회계기준이나 해석이 없다면, 경영진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회계기준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개념체계(Framework)’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계정책은 유사한 거래 및 사건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회계정책의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기준의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만일 특정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변경(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은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Issue of new/revised standards not yet effective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신 규정/개정규정의 공표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시행일에 앞서 공표됩니다. 시행 이전의 기간이라도 기업에 관련된 신/개정 규정에 대해 경영진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회계추정의 변경

기업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합니다.

Errors 오류

오류는 실수나 부주의 또는 정보의 잘못된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발견된 오류는 전기오류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소급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5. Financial instruments –PSAK 50, PSAK 55 and PSAK 60

금융상품

Objectives and scope 목적과 범위

금융상품은 다음의 회계기준에서 다루어집니다:

- PSAK 50,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의 구분 및 상계;
- PSAK 55,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PSAK 60,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금융상품: 공시;

이 회계기준의 목적은 부채와 자본의 구분, 상계, 인식, 제거, 측정, 위험회피와 공시를 포함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와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회계기준의 범위는 넓습니다. 회계기준은 채권, 채무, 채권 및 주식 투자, 차입금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규정합니다. 또한 회계기준은 현금 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결제될 수 있는 비 금융자산의 특정 매매계약에도 적용됩니다.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의 본질과 특징

금융상품은 상거래 채권채무, 차입, 금융리스채권과 파생상품과 같은 광범위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상품은 PSAK55에 따라 인식 및 측정되고 PSAK 60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지불하게되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비금융 항목은 미래 현금흐름에 보다 간접적이고 비계약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 현금;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금융부채 -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파생상품 - 기초변수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며;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

Embedded derivatives in host contracts 내재파생상품

일부 금융상품과 계약은 하나의 계약 내에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중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재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원본 금액을 주식시장 지수변동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은 관련 주식시장 지수의 지분 파생상품입니다.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인 손익계산서에 인식됨).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다를 때,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IAS 39는 이러한 판단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다수의 예시를 제공합니다.

잠재적 내재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분석은 PSAK 55의 보다 난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의 분류

PSAK 55 하에서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을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PSAK 55는 금융자산을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금융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상품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고정이거나 확정할 수 있는가? 금융상품에 만기가 존재하는가?
- 자산이 매각목적인가? 경영진은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가?
-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인지, 혹은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 금융상품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 경영진이 인식 단계에서 특정한 분류로 지정하였는지?

금융부채는 매매목적이거나 또는 파생상품(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인 경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경우(특정 조건 하에서)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금융부채는 '기타부채'로 분류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그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측정의 변동은 각각 손익계산서(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다른 분류로 재분류하는 것은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재분류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공시사항이 요구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파생상품과 자산은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Financial liabilities and equity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금융상품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이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보고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업의 채무계약이행(debt covenant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주요한 특징은, 계약상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상품을 지불하도록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고; 발행자는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채의 경우 발행자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발행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발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불할 계약상 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이나 보통주는 발행자의 결정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지며, 발행자 지분상품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또한, 특정 성격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끊기능 금융상품 (예를 들어, 일부 조합이 발행한 지분 그리고 일부 파트너쉽 지분); 그리고
-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의무를 지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제한된 존속기간을 명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혹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금융상품의 법적형식 보다는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실질이 사채와 동일한 상환우선주는 사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우선주는 발행자의 주식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지분상품 보다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다른 금융상품들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의 특성과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분류요건에 대하여 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수량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와 같은 금융상품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전환권)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손익계산서 상 이자, 배당, 손익은 관련 금융상품의 분류를 따릅니다. 만일 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된다면, 관련 배당은 이자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지급하는 부분은 배당으로 표시됩니다.

Recognition 인식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여부는 명확한 편입니다. 기업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합니다.

Derecognition 제거

제거는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을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거의 조건은 보다 복잡합니다.

Assets 자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자산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주요 현금흐름 원천으로 금융자산을 사용합니다. PSAK 55가 규정하는 제거의 요건은 거래가 금융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기업이 금융상품의 인식을 중단함) 또는 금융상품이 재원 마련의 담보로 사용된 것인지 (기업은 수취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함)를 결정합니다. 양도 또는 담보 여부 평가는 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별도의 조건없이 양도되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더이상 보유하지 않게된다면, 금융자산은 분석할 필요없이 명확하게 제거됩니다. 반대로, 금융자산이 양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을 계약 조건상 양도자가 보유하는 경우, 제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거여부에 대한 분석은 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 차입과 팩토링은 제거 여부에 대한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한 복잡한 거래의 예입니다.

Liabilities 부채

기업은 금융부채가 소멸된 때에만 인식을 중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이행·취소 또는 만료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Measurement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PSAK 55에 따라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가 아닌 경우,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가산·차감하여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 (지불하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하에서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공정가치는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거래 정보를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얻은 정보만을 포함하는 기술적 변수를 고려한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후의 측정은 최초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금융자산은 결과적으로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아주 드문경우 신뢰성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 또는, 이러한 신뢰성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

대여금과 수취채권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측정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채무상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보유자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파생상품(분리가능한 내재파생상품 포함)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해당하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이외의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에 따라 다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산출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Hedge accounting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란 금융상품(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모든 또는 일부 위험을 상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인식 시점을 변경하여, 대상항목과 수단의 손익이 동일한 회계기간이 인식되도록 합니다. 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조합이 갖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a)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 관계, 위험관리 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그리고 (b)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일관성있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확고한 의지.
- 현금흐름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확고한 의지 또는 예상거래의 매우 높은 발생가능성.
- 순투자위험회피 –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외환 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을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되도록 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본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입니다. 만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가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보다 크다면, 초과부분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만일 위험회피대상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취득하는 예상거래라면, 기업은 (a) 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b)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기본계정에 남겨두었다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정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합니다.

Disclosure 공시/

금융상품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PSAK 1, PSAK 50 및 PSAK 6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SAK 1은 경영진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SAK 50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표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된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순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PSAK 60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하고,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을 포함합니다. 규정은 또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3가지 수준의 서열체계를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일부 양적공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시요구사항은 은행과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을 보유한 모든 기업은, 금융상품이 차입금, 매입채무와 매입채권, 현금 및 투자자산과 같이 단순한 것이라도, 공시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6. Foreign currencies – PSAK 10 and PSAK 63 환율변동효과

다수의 기업이 해외 공급자 또는 고객과 사업관계를 갖으며,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주요 회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일부 거래(예를 들어, 해외 공급자나 고객과의 거래)는 외화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기업의 본래 통화로 기록되거나, 혹은 대체적 방법으로 재무보고 목적상 ‘기능통화’로 기록됩니다.
- 기업은 해외 자회사, 지사 혹은 제휴 등의 형태로 해외 영업을 영위하며 각 해외사업장은 현지의 통화로 회계기장을 합니다. 각기 다른 통화로 기록된 거래를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외 사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는 단일 통화로 환산되어야 하며, 그룹 연결재무제표는 이러한 단일 통화(‘표시통화’)로 보고됩니다.

아래에는 상기 두 상황에서 요구되는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Expressing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in the entity's functional currency **외화거래의 기능통화 표시**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됩니다. 현금이나 현금으로 수취 또는 지급될 금액을 나타내는 외화잔액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합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되지 않고 외화로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표시합니다.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Translating functional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into a presentation currency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해당거래일의 환율 또는 실제환율과 유사한 경우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적용하는 경우, PSAK 63에 따라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구성요소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이용하여 표시통화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7. Insurance contracts –PSAK 62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위험은 반드시 보험위험이어야 하며,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이어야 합니다.

PSAK 62는 모든 보험계약 발행자(보험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상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원수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PSAK 62는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특정 최소요건을 갖춘경우에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최소요건 중 하나는 보험부채 금액이 부채적정성평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모든 계약상 관련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보험부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정보에 있어 공시는 더욱 중요합니다. PSAK 62는 다음의 두가지를 주요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음을 반드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8. Revenue –PSAK 23, PSAK 34, and PSAK 61 수익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만일 하나의 거래가 실질이 여러 개의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면, 수익은 각 공정가치에 따라 부분별로 배부됩니다. 각 부분에 배부된 수익은 아래의 별도 수익인식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을 포함하여 판매된 경우 수익은 인식시점에서 제품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배부됩니다; 이후 수익의 인식은 각 부분의 수익인식 기준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Revenue –PSAK 23 수익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2) 판매자는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하며, (3)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4) 수익금액과 발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고,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3)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다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됩니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ISAK 10, ‘Customer loyalty programs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였을 때 제공되는 보상점수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혹은 수퍼마켓 회원 포인트제도.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부됩니다. [주: ISAK 10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3호(IFRIC 13)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와 동일]

Construction contracts –PSAK 34 건설계약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보통 정액계약 또는 원가보상계약이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은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며, (2)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Government grants –PSAK 6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인식의 방법으로 관련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과 별도의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보조금에 부가되는 조건이나 의무의 충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을 인식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Segment reporting –PSAK 5 영업부문

일부 특정 기업은 부문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채무상품이나 금융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기업은 이러한 부문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부문은 기업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ng Decision-Maker, 'CODM')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각 부문의 내부보고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이 식별됩니다.

영업부문이 보고부문의 정의를 충족하면, 영업부문별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보고부문이란 회계기준이 정한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하나의 보고부문 또는 보고부문 집단입니다. 그러나,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부문을 별도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모든 보고부문에 대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CODM)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공시합니다. 다른 부문별 공시로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지역별 수익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공시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가 검토하는 다른 구체적인 성과와 자원에 대한 정보도 공시합니다. 수익, 손익, 자산과 기타 중요항목의 금액을 보고부문들의 합계에서 기업전체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으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가 검토하는 정보 역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10. Employee benefits –PSAK 24 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종류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급여(임금,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유급휴가나 장기근속휴가와 같은 보상받는 휴가 등), 해고급여(해고수당 등), 퇴직급여(퇴직연금 등). 주식기준보상은 PSAK 53에서 다룹니다 (Section 11을 참조).

퇴직급여는 연금, 퇴직후생명보험 및 퇴직후의료급여를 포함합니다. 연금은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에는 보험수리적가정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장기종업원급여, 특히 퇴직급여는 보다 복잡한 측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s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의 회계는 단순합니다: 확정기여제도의 원가는 해당 회계기간에 종업원을 위해 지급해야하는 납부금액입니다.

Defined benefit plans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회계는 보험수리적가정과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상 채무와 비용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시되는 금액(퇴직급여채무)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보험수리적 손익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아래, 'corridor approach, 범위접근법' 참조).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이직률 및 사망률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와 미래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과 같은 재무적 변수에 대한 추정(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채무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보험계리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사외적립자산은 시장가격이 없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할인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엄격하게 정의되며,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에 한하여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이 표시됩니다.

각 재무상태표일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합니다. PSAK 24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접근법에서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 범위접근법('corridor approach')에서는, 보험수리적손익이 범위(확정급여채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종업원의 잔여 기대근무기간 동안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방법 또한 허용됩니다.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타포괄손익 접근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범위접근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과의 차이가 발생하게되며, 이러한 차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PSAK 24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다양한 구성요소로 나누어 변동을 측정하며, 총 순변동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비용 또는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구성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이자원가 (확정급여채무의 할인에서 발생);
-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기대수익 (기대이자, 배당 및 사외적립자산의 자본이득);
-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보험수리적손익 (상기 참조); 그리고
- 과거근무원가 (제도개정 또는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과거근무원가는 근무원가가 가득되는 시점까지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비용인식합니다. 만일 근무원가가 이미 가득되었다면,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정산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축소 또는 정산이 일어나는 시점에 즉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과거근무원가를 가득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득여부에 따라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여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ISAK 15 'PSAK 24 – The limit on a defined benefit asset, minimum funding requirements and their interaction; PSAK 24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ISAK 15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최소적립요구가 연금자산 혹은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ISAK 15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4호(IFRIC 14)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와 동일]

11. Share-based payment –PSAK 53 주식기준보상

PSAK 53은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됩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대가를 제공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 사이의 계약:

- (a) 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 (b)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

가장 일반적인 예는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과 같은 주식보상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자문수수료와 같은 비용이나 자산의 구매대금의 지급을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할 수 있습니다.

PSAK 53는 회계처리에 있어 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와 회계처리 모두, 옵션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모델의 복잡성과 거래조건의 다양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난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주식기준보상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기업은,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보고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는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주식결재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용역이나 재화와 용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됩니다. 또한, 경영진은 기업이 수취하거나 제공하는 식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이 있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별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 역시 PSAK 53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합니다. 주식결재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부여일에 한번 공정가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재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달리 처리됩니다. 현금결재보상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부채는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Taxation –PSAK 46 법인세**

PSAK 46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는 소득에 대한 세효과만을 다룹니다. 당기법인세는 당해 회계기간에 법인세신고서에 표시될 과세대상금액과 손금산입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기업은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만일 납부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과세소득에 기초한 법인세는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기초하여 계산된 법인세비용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PSAK의 소득과 비용에 대한 인식기준이 세법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이러한 불일치를 다룹니다. 이연법인세회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일시적차이를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치가 재측정되어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경우, 재측정으로 인해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게 되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커짐), 세무상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는 다음의 일시적차이를 제외하고는, 재무재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적용됩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이연법인세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리고
-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어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사용, 매각 또는 결합된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경영진은 오직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이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업결합,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의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예를 들어, 과거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 또는 더 이상 전액 인식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13. Earnings per share –PSAK 56 주당이익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무분석가나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EPS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보통주에 해당하도록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주 등의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순이익에서 차감합니다.

보통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또는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기업은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통주를 공개된 시장에서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증권감독기구나 다른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PSAK 56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본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합니다. 잠재적보통주란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예를 들어 전환사채나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 등, 을 의미합니다.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손익계산서가 있는 경우, 그 별도 손익계산서)에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Balance sheet and related notes 재무상태표와 관련 주석

14. Intangible assets –PSAK 1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매각, 이전 또는 라이선스 가능)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할 때 식별가능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Separately acquired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합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구입가격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Internally generated intangible assets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기업이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예를 들어,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의 존재);
-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지원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 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연구 또는 개발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프로젝트가 향후에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자본화될 수 없습니다. 많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자본화되지 못하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연구, 시연 또는 광고비용을 포함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Intangible assets acquired in a business combination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발생가능성과 측정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피취득자의 재무제표 상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은 항상 인식하게 됩니다.

Subsequent measurement 후속 측정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합니다. 상각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봅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손상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손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그리고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SAK 16 유형자산**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E')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원가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자산 취득의 반대급부(매입할인과 리베이트)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포함)를 가산합니다.

직접 관련 원가는 설치장소 준비원가, 운송 및 설치원가, 관련 전문가 수수료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해당 원가가 총당부채 [주, 복구총당부채]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원가모형에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재평가 모형에서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원가에서 추정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합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후속 지출은 인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합니다.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다른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금액은 개별 항목의 내용연수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하나의 항목이 대체되는 경우, 새로운 항목은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화되며, 대체되는 항목의 장부가액은 제거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합검사나 대수선원가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자본화합니다. 이때 대체되는 부문의 장부가액은 제거됩니다.

Borrowing costs 차입원가

PSAK 26에 따라,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16. Investment property –PSAK 13 투자부동산

특정 부동산은 PSAK 13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은 자가사용하는 부동산과 중요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공정가치와 그 변동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입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분이나 두가지 모두)입니다.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에 포함됩니다.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PSAK 16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 또는
- PSAK 14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가사용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은 구입금액에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인식 후의 측정에 있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택한 정책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투자부동산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건설 또는 개발중인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PSAK 13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합리적이고 의사가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부동산이 교환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원가모형을 채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주석에 공시됩니다.

17. Impairment of assets –PSAK 48 자산손상

유동 및 비유동의 거의 모든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과대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손상의 기본적 의미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란, 합리적이고 의사가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의 처분을 통해 수취하게 될 대가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경영진은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화폐의 시간가치 및 자산이 갖는 본질적 불확실성의 현재 평가를 반영한) 세전 시장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손상 기준서를 적용받는 모든 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특정 자산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손상의 징후가 없더라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합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부정보 – 예를 들어, 기술·시장·경제 또는 법률환경의 불리한 중요한 변화나 시장이자율의 상승; 내부정보 – 예를 들어, 자산이 진부화되었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혹은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를 통한 증거.

회수가능액은 개별자산 수준에서 측정합니다. 그러나 개별자산은 대부분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s, 'CGUs')로 표현되는 자산집단으로 손상검토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된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속한 자산에 배부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부됩니다. 그러나, 영업권 손상검사가 허용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은 통합 전 영업부문 [주: PSAK 5 참조] 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18. Lease accounting –PSAK 30 리스회계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 (the Lessee)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는 중장기 금융의 주요한 원천입니다; 리스회계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스는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집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모두 가집니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리스는 PSAK에서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지급에 따른 의무[주: 금융리스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리스이용자산 금융리스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제공자는 리스한 자산을 매출채권[주: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채권은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 –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리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무보증잔존가치를 가산한 금액 – 으로 측정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리스된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감가상각합니다. 지불된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손익계산서에 정액기준으로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의 법적 형태와 연관된 거래는 거래의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자산을 재구매할 의무가 있는 판매후리스거래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이전과 동일한 사용권을 갖는다면 실질상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자산담보부 금융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동일하게, 리스의 법적형태가 아니라하더라도 구매자가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특정자산에 의존하는 거래라면 실질적으로 리스로 볼 수 있습니다.

19. Inventories –PSAK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재고원가는 수입관세,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 매입운임, 및 기타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NRV')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PSAK 14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FIFO)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합니다. 후입선출법(LIFO)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매회계연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 Provisions and contingencies –PSAK 5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부채란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기업의 현재 의무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충당부채는 부채의 범주안에 속하며,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됩니다.

Recognition and initial measurement 인식과 최초 측정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음;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기대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무는 의무발생사건으로부터 발생하며,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의 형태를 보입니다. 의무발생사건이란 당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만일 기업이 미래 행동을 통해 미래 지출을 회피할 수 있다면, 이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미래 특정시점에 지출할 의도가 있다거나 미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손실인 경우 제외).

의무가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법적’의무의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은 실무관행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의무’에 해당).

만일 기업이 손실부담계약(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상 현재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Restructuring provisions 구조조정충당부채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하여는 특정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정조건은: (a)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b)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일 후에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되었다면,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이라하더라도,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구속력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포함합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을 계획한 경우라도 처분예상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Reimbursements 변제

의무와 기대되는 회수금액은 별도로 부채와 자산에 표시합니다 [주: 충당부채를 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나 의무의 이행결과로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변제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계표시는 손익계산서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Subsequent measurement 후속측정

경영진은 매 보고기간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적절한 할인율 반영)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Contingent liabilities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의무로, 다음의 이유로 인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a)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는 (b)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

우발부채는 인식하지는 않으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를 포함한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Contingent assets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며;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 추정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기술합니다.

21.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and financial commitments –PSAK 8 보고기간후사건*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확정을 준비하는 데에 보고기간말로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실무적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사건(‘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고기간후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 이전에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말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 이후에 사업중단계획을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한하여만 수정합니다. 또한 기업이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사건에서도 재무제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주의 발행이나 중요한 사업결합과 같은 중대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공시합니다.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도 배당금은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배당의 주요한 내용은 공시합니다.

기업은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22. *Equity (share capital and reserves)* 자본 (자본금과 잉여금)

자본은 자산 및 부채와 함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3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DSAK의 개념체계는 자본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정의합니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종종 기업의 지분상품과 잉여금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자본은 재무제표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시됩니다. 소유 기업의 자본은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자본금과 잉여금, 주주 자금 그리고 소유권 등을 일컫습니다. 자본은 다른 특징을 갖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회계기준의 목적상 무엇이 지분상품을 구성하고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상품 기준서 PSAK 55의 규정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그 구분에 따라 부채, 자본 또는 부채와 자본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으로 처리됩니다. 지분상품은 (예를 들어, 상환이 불가능한 보통주) 일반적으로 발행시점에 순거래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지분상품은 최초인식 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공정가치평가 부분, 위험회피 부분, 자산재평가 부분과 외화환산에 따른 부분 및 기타 의무적립금을 포함합니다.

***Treasury shares*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및 소각은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Non-controlling interests 비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소수지분’의 새용어)은 지배주주지분과 구별하여 별도의 자본구성요소로 표시됩니다.

Disclosures 공시

PSAK 1은 발행된 총자본금과 잉여금, 자본변동표의 표시, 자본관리 정책과 배당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23.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 PSAK 4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PSAK 4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자 의결권의 5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연결은 취득일에 이루어집니다. 취득일은 피취득자의 순자산과 영업에 대한 지배력이 취득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된 날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이 하나의 기업일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보여주도록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간의 매매거래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거래는 제거됩니다.

기업집단의 규모나 특정 종속기업이 다른 영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연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기업은 취득일로부터 피취득자의 재무성과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며,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Section 24 참조).

지배기업은 독립기업으로서 별도재무제표(일반적 목적의 연결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첨부되는 보충적 정보로써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또는 PSAK 55에 따른 금융상품의 평가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이 종속기업을 취득하기 이전 또는 이후 시점의 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은 관련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다는 내부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Consolidation of special purpose entities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 'SPE')은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설립된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도 명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특수목적기업 간의 관계의 실질이 당해 기업에 의해 특수목적기업이 지배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과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의 과반이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 한국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참조]

24. Business combinations –PSAK 22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피취득자’)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PSAK 4에 정의된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분보유, 이사회 지배 그리고 계약을 통한 지배를 포함하여, 어느 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사업결합은 다양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PSAK 22는 법적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 거래자가 참가하는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일련의 전체적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거래의 종결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관련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관련되었는지 결정하는 데에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결합은 취득법 [주: 구 회계기준상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로 요약됩니다:

- 취득자의 식별.
- 취득일의 결정.
-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피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대가(‘이전대가’)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법인 취득자(다른 사업의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결합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첫째로 취득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대가, 취득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측정합니다(취득일은 피취득자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임).

피취득자의 자산(인식되지 아니하였던 무형자산 포함), 부채와 우발부채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정상거래 조건에서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피취득자로부터 100% 미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비지배지분이 발생합니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나타냅니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지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포함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발행되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대가의 지급이 이연되는 경우,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다면 취득일에 현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할인합니다. 이전대가는 기업의 통제를 교환하는 대가로 매도자가 지급하는 금액만을 포함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관계를 청산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나 미래 종업원 근무에 대한 조건부 지급, 취득관련원가는 이전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대가의 일부분은 미래사건의 결과나 피취득기업의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 조건부 대가 역시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취득일 이후 조건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PSAK 50 실무지침에 따라 부채 (매 보고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공정가치로 재측정) 또는 자본 (재측정하지 않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되거나 별도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취득자산으로부터 발생하게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반영합니다. 영업권은 (1)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의 합계금액과 (2)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금액의 차이입니다. 비지배지분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영업권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비지배지분이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지분비율로 측정된다면, 영업권은 지배기업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되며, 매년 손상검토를 해야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자주 손상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 – 예를 들어, 매도자가 매각을 강요받아 행한 사업결합 – 영업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거래가 가능하며, 이의 ('염가매수차익')이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25. Disposal of subsidiaries, businesses and non-current assets –PSAK 58 종속기업, 영업 및 비유동자산의 매각

PSAK 58은 매각이 발생하였거나 계획된 때에 적용됩니다. PSAK 58의 매각예정기준은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계속사용이 아닌 주로 매각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은 폐기, 손상 또는 불용되는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한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대응하는 회계기준]

IFRS 5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란, 경영진의 매각이행 증거가 있고;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 순공정가치 (매각비용 차감)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하고;
-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공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함)합니다.

중단영업은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는 기업의 구분단위로: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나타내거나;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거나;
또는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입니다.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영업이 매각예정으로 구분되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중단영업이 발생하여도 재무상태표 정보는 재작성되거나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포괄손익계산서 정보는 비교가능기간에 대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중단영업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별도로 공시합니다.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종속기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일은 통제가 이전된 날입니다.
연결손익계산서는 처분일까지 종속기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성과를 포함합니다; 처분에 따른 손익은 (a) 순자산 장부금액에 귀속가능한 영업권 금액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된 금액 (예를 들어, 외화환산차이와 처분관련 평가손실)을 가산한 금액과; (b) 매각 대가와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26. **Equity accounting –PSAK 15 지분법**

관계기업이란 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주: 구 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투자의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는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적 영업적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피투자기업 의사결정권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한국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 참조]

관계기업투자는, PSAK 58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일 이후에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해 투자기업 지분만큼 손익을 인식하여 장부가액에 가감합니다.

관계기업투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하나의 항목(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을 포함)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PSAK 48 ‘자산 손상’에 따라, PSAK 55가 규정하는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개별 자산으로서 손상검토를 수행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는 손실 인식을 중지하고, 장부금액을 ‘영(o)’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투자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보충적 정보로 표시되는 경우)에서는 관계기업투자는 취득원가로 표시하거나, 또는 PSAK 55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인식합니다.

27. Interest in joint ventures – PSAK 12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조인트벤처란, 둘 이상의 당사자 ('참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의미합니다.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조인트 벤처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공동지배기업, 공동지배사업 및 공동지배자산. 회계처리는 조인트벤처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또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공동지배기업은 PSAK 12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사용합니다. ISAK 12는 지분의 대가인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비현금 분배를 다룹니다.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은 참여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기업설립이 없습니다. 공동지배사업에서 각 참여자는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참여자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공동사업의 일부분을 수행합니다. 각 참여자는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자원에 각기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습니다. 공동지배자산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산에 대한 공동지배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을 보유한 경우, 계약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과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을 적절한 연결방법 또는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Other subjects 기타 주제

28. Related-party disclosures – PSAK 7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필수 공시사항으로, 특수관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종속기업;
-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
- 관계기업과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
- 조인트벤처와 연결실체 내의 일원;
-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그리고 가까운 가족);
- 기업에 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개인 (그리고 가까운 가족); 그리고
- 퇴직급여제도.

자금제공자는 단순히 기업과 통상적인 업무관계가 있다고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합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합니다.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의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합니다. 공시는 특수관계의 구분별로 그리고 중요한 거래의 종류별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다음의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에 대하여 공시가 면제됩니다: (1) 보고기업에 대해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부 (2) 보고기업과 다른 기업 둘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부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둘 간에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그 다른 기업. 면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정부명 및 보고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은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거래의 성격 및 금액과,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표시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29. Cash flow statements – PSAK 2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와 함께 재무보고의 주요 재무제표 중 하나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특정기간에 걸쳐 범주별로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창출되고 사용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이용자에게 기업의 현금 창출과 사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을 의미합니다.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사업결합 포함)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의미합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직접법 (현금의 수취와 지급을 총액으로 표시) 또는 간접법 (당기순손익에서 비영업과 비현금 거래를 조정하고 운전자본의 변동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금 수취와 지급을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의 수취지급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일관성있게 구분되어야 하며, 적합한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합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합니다.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총합은 특정기간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과 동일합니다.

종속기업 취득을 위한 주식의 발행이나 금융리스를 통한 자산의 취득과 같은 중요한 비현금 거래는 별도로 공시합니다. 비현금거래는 손상차손/환입; 감가상각; 감모상각; 공정가치 평가손익; 그리고 충당금의 설정을 포함합니다.

30. Interim reports –PSAK 3 중간보고

중간재무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PSAK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특히 상장기업들에, 중간재무보고서를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PSAK 3은 기업이 PSAK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발행할 때 적용합니다. PSAK 3은 중간재무보고서가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과, 보고서에 포함되는 거래와 잔액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PSAK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PSAK 1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를 작성하거나, 또는 요약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당기와 비교기간 (요약 혹은 전체 재무제표에서)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포괄손익계산서 (별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포함) –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자본변동표 –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그리고
- 선별적 주석.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간기간에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게 될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 손익을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특정 비용 (예를 들어, 법인세는 연간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됨)이나 중간재무제표에 사용되는 추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또는 지분상품이나 금융자산으로 원가로 측정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습니다.

PSAK 3은 중간재무제표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체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
- 비정상 또는 비경상 항목.
- 이전 보고기간 이후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 (당기 또는 이전 재무보고기간).
-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추정에 대한 이해의 유의성.

전체적인 목적은 중간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 유의한 모든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31.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ISAK 16 and ISAK 22

민간투자사업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PSAK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ISAK 16,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회계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ISAK-2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민간투자사업: 공시)'는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주: 한국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와 제2029호 참조]

ISAK 16은 공공부문(사업허가자)이 민간부문(사업시행자)에서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 서비스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공공-민간 투자사업에 적용합니다. 해석은 또한 사업시행자가 누구에게 어떤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사업허가자가 통제·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자는 또한 사업기간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유의한 잔여지분을 통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통제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을 사업허가자에게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리스하였다고해서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느 범위까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고 자산 소유에 따른 부수적인 보상을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과 무관하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게될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사업면허)를 한도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인식하거나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두 가지 모형 모두에서, 사업운영자는 건설 및 개량서비스와 관련된 수익과 원가를 PSAK 34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사업운영자는 PSAK 23에 따라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해야하는 계약상 의무(개량서비스 제외)는 PSAK 57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2. Retirement benefit plans –PSAK 18 퇴직급여제도

PSAK에 따라 작성되는 퇴직급여제도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는 반드시 PSAK 18,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기준은 PSAK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도에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재무제표에 적용됩니다.

PSAK 18은 확정기여제도에서 다음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보고서;
-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변동보고서;
-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
-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회계기간 중 제도에서 발생한 변화의 영향에 대한 설명; 그리고
- 기금적립정책에 관한 설명.

ISAK 18은 확정급여제도에서 다음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의 보고서 – (1) 다음을 나타내는 보고서: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및 초과액 또는 부족액 또는 첨부된 보험수리보고서에 있는 정보로의 참조표시;
- (2)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가)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주석공시 혹은 (나) 첨부된 보험수리적보고서에 있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로의 참조표시;
-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 그리고
-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회계기간 중 제도에서 발생한 변화의 영향에 대한 설명.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동일).

Index by standards and interpretation

Standards	PSAK Title	K-IFRS 기업회계기준서	Page
PSAK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3, 20, 53, 67
PSAK 2	Cash flow statements	제 1007 호 현금흐름표	65
PSAK 3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 1034 호 중간재무보고	67, 68
PSAK 4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 1027 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54, 56
PSAK 5	Operating segments	제 1108 호 영업부문	27
PSAK 7	Related-party disclosures	제 1024 호 특수관계자 공시	63
PSAK 8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제 1010 호 보고기간후사건	51
PSAK 10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 1021 호 환율변동효과	21
PSAK 12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 1031 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62
PSAK 13	Investment property	제 1040 호 투자부동산	40
PSAK 14	Inventories	제 1002 호 재고자산	40, 46
PSAK 15	Investment in associates	제 1028 호 관계기업 투자	61
PSAK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 1016 호 유형자산	38, 40
PSAK 18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제 1026 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71
PSAK 19	Intangible assets	제 1038 호 무형자산	36
PSAK 22	Business combinations	제 1103 호 사업결합	54, 56
PSAK 23	Revenue	제 1018 호 수익	24, 70
PSAK 24	Employee benefit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28, 30
PSAK 25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6, 8
PSAK 26	Borrowing costs	제 1023 호 차입원가	39
PSAK 30	Leases	제 1017 호 리스	44
PSAK 34	Construction contracts	제 1011 호 건설계약	24, 25, 70
PSAK 46	Income taxes	제 1012 호 법인세	33
PSAK 48	Impairment of assets	제 1036 호 자산손상	42, 61

Standards	PSAK Title	K-IFRS 기업회계기준서	Page
PSAK 50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	10, 20, 57
PSAK 53	Share-based payment	제 1102 호 주식기준보상	28, 31, 32
PSAK 55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 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5, 11, 12, 15, 16, 52, 55, 61
PSAK 56	Earnings per share	제 1033 호 주당이익	35
PSAK 5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 1037 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47, 70
PSAK 58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종단영업	4, 59, 61
PSAK 60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 1107 호 금융상품: 공시	1, 10, 20
PSAK 61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s of government assistance	제 1020 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24, 26
PSAK 62	Insurance contracts	제 1104 호 보험계약	23
PSAK 63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 1029 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21, 22
ISAK 10	Customer loyalty programmes	제 2113 호 고객충성제도	25
ISAK 12	Jointly controlled entities – Non monetary contribution by venturers	제 2013 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62
ISAK 15	PSAK 24 - The limit on a defined benefit asset, minimum funding requirements and their interaction	제 2114 호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30
ISAK 16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 2112 호 민간투자사업	69
ISAK 18	Government assistance – No specific relations to operating activities	제 2010 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71
ISAK 2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	제 2029 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69

Authors, contributors and reviewers

Djohan Pinnarwan
Irwan Lau
Susana Arlianto
Octaviana Lolita
Dwi Jayanti
David Ramali
Merriana Lestari

PSAK pocket guide 2013 is designed for the information of readers.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may not be comprehensive or may have been omitted which may be relevant to a particular reader. In particular, this booklet is not intended as a study of all aspects of Indonesi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does not address the disclosure requirements for each standard. The booklet is not a substitute for reading the Standards when dealing with points of doubt or difficulty. No responsibility for loss to any person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ng as a result of any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can be accepted by KAP Tanudiredja, Wibisana & Rekan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Recipients should not act on the basis of this publication without seeking professional advice.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6
Jakarta 12940 - INDONESIA
P.O. Box 2473 JKP 10001
Telp: +62 21 5212901
Fax: +62 21 5290 5555/5290 5050
www.pwc.com/id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PwC Indonesia is comprised of KAP Tanudiredja, Wibisana & Rekan, PT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Advisory and PT Prima Wahana Caraka,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Indonesian member firm of the PwC global network, which i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wC Indonesia.

© 2013 KAP Tanudiredja, Wibisana & Rekan.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